

국 토 교 통 부

훈계 요구·통보

제 목 중대교통사고 및 차고지 미확보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진주시, 합천군, 창녕군, 남해군

관 련 자 ① 진주시 ○○○과(전 ○○○과) 지방○○○○주사보 ○○○
② 합천군 ○○○○○과(전 경제교통과) 지방○○주사보 ○○○
③ 합천군 ○○○○○과 지방○○주사보 ○○○
④ 창녕군 ○○○○○과 지방○○서기 ○○○

내 용

지방○○○○주사보 ○○○은 2014. 2. 3.부터 2016. 8. 28까지, 지방○○주사보 ○○○은 2014. 1. 14.부터 2015. 3. 8까지 경상남도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운수사업자 명단을 통보¹³⁴⁾받아 사업일 부정지 등의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지방○○주사보 ○○○은 2015. 3. 9.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서기 ○○○은 2016. 1. 2.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에 대한 허가업무와 허가기준이 미달되는 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하였다.

13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탁)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제공 요청 및 기록관리 등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교통안전공단에서 경상남도로 통보(문서)하면 경상남도에서 관할 시청 및 군청으로 이첩(문서)하여 통보

가. 중대교통사고 발생 운수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¹³⁵⁾은 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별표1] 제12호 가목에 따르면 1건의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사상자 수에 따라 위반차량 운행정지¹³⁶⁾, 감차¹³⁷⁾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진주시(○○과)에서는 2016. 7. 28. 경상남도로부터 경남 ○○시 ○○로 ○○○에 있는 ○○○○(주) 소속 화물자동차(운전자 ○○○, 차량번호: ○○○○○○○○)가 2016. 5. 3. ○○○도 ○○군 ○○면 ○○리 ○○○○-○○에서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중상자 1명이 발생한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을 통보받았으므로 ○○○○(주) 소속 위반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위 ○○○○(주) 소속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에서 지적되자 2016. 11. 18.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진주시와 합천군에서는 [표]와 같이 3건의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통보사항에 대하여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13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처분 및 감차조치 명령,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자격이 취소 및 효력의 정지,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업무 등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

136) 중상자(2명이하: 운행정지 5일, 3명~4명: 운행정지 15일, 5명~9명: 운행정지 30일)
사망자(2명이하: 운행정지 30일, 3명~4명: 운행정지 60일)

137) 중상자(10명 이상: 1대 감차), 사망자(5명~9명: 1대 감차, 10명 이상: 2대 감차)

[표] “중대한 교통사고 통보내역”

연번	사업자	사업자 주소	운전자	차량 번호	사고일자 (통보일자)	중대한 교통사고 통보내용	통보받은 지자체 (관할청)	비고
1	○○○○ (주)	○○ ○○시 ○○로	○○○	○○○ ○○○ ○○○	2016. 5. 3. (2016. 7. 28.)	중상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진주시 (진주시)	2016.11.18. 사전통지
2	○○○○ 협회	○○ ○○시 ○○동	○○○	○○○ ○○○ ○○○	2015. 9. 16. (2015. 11. 10.)	중상 1 (횡단보도 통행자 보호위반)	진주시 (진주시)	2016.11.18. 사전통지
3	(주)○○ ○○138)	○○ ○○군 ○○읍 ○○리 ○○○○-○	○○○	○○○ ○○○ ○○○	2014. 10. 2. (2014. 11. 27.)	중상 2 (중앙선 침범)	합천군 (합천군)	2016.11.30. 사전통지

* 경상남도 제출자료 재구성

나. 화물자동차 차고지 미확보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5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1]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자기 소유 또는 1년 이상 장기 임대로 최저보유 기준에 맞게 차고지 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1]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 전부 정지 처분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합천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윤재규의 차고지 임차기간이 2012. 10. 29. 만료되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차고지 설치 확인서’ 징구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 전부정지(30일)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138) 합천군 담당자 ○○○은 재직기간인 2014. 11. 27. 경상남도로부터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자 통보를 받고, 2015. 2. 5.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2015. 2. 27.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통보하고도, 이후 2015. 3. 9. ○○○과로 인사발령 되면서 행정처분 사항에 대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처분이 누락

위 윤재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에서 지적되자 2016. 11. 25.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리는 문서를 통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합천군 등 3개 시·군¹³⁹⁾에서는 차고지 임차기간이 만료된 화물운송사업자 ○○○ 등 16명의 사업자(차량 16대)에 대해 차고지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허가기준 충족 여부 확인 등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진주시장, 합천군수, 창녕군수, 남해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중대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중상자를 발생하게 한 ○○○○(주) 등 3명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차고지 임차기간이 만료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윤재규 등 16명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전부 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39) 합천군, 창녕군, 남해군